

##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공무원(시설물청소원 등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(안)

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공무원근로자(시설물청소원, 시설물관리원나급) 채용 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5일  
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

### 1. 최종 합격자

- ▶ 시설물청소원 : 응시번호 02번, 04번
- ▶ 시설물관리원나급 : 없음

### 2.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

- 제출기한 및 방법 : 2024. 4. 9.(화) 18:00까지 / 방문 또는 등기우편
- 제출장소 :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(주소: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3-23)
- 제출서류
  - 채용신체검사서 1부(2년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가능)
  -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  - 주민등록등·초본 (**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**) 각 1부
  - 결격사유 확인서 1부(붙임 양식)
  - 공정채용 확인서 1부(붙임 양식)
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붙임 양식)
  - 사진(반명합판) 1매 및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- 채용예정일 : 2024. 4. 15.(월)

### 3.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채용담당자(061-339-11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별첨자료 1

결격사유 확인서

- 성 명:
- 생년월일:

본인은 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하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4 . . .

확인자: (인)

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

별첨자료 2

문화재청 공정채용 확인서

우리 기관은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17.7.20.)」에 따라 기간제·파견·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(무기계약직)을 추진하였습니다. 이후, 「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(18.11.1./고용노동부)」과 「문화재청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확립 추가 방안(18.11.7.)」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2017.5.1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,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- 본인은 년 월 일 입사자(기간제/파견/용역/신규채용)로, 문화재청에서는 년 월 일 부터 근무를 시작(또는 시작 예정)하였다.
1. 본인은 (구직사이트/정부 일자리 연계 채용/지인 소개/친인척 소개/기타 사유)의 경로로 해당기관(업체)에 취업하였으며, 문화재청에(기간제/파견/용역/신규채용)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.
- 2-2. 본인은 ( ) 사유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하였다.

<< 작성예시 >>

- ①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접근편의성 ② 평소 관심 있어 하는 분야
- ③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발표에 따른 전환 희망 ④ 기타사유 등 상기 사유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재

3.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( )촌 이내의 관계로, ( )에 근무 중인 (성명 : )이다.

3-1. (3번 답변 응답자만 작성)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자가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(생각한다./생각하지 않는다.)

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, 추후 작성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계약해지 등의 관련 절차에 따르겠습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4 . . .

확인자 : (서명/인)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고지
- ① 수집·이용 목적
  -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「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」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, 감사자료 작성
- ② 수집·이용 항목
  - 성명, 소속, 직종, 소속기관 입사일자, 입사방식, 문화재청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, 성명
- 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동안 보유

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

